

제 호				등록번호판재발급 신청서	
소 유 자	성 명(명칭)			주 민 (법 인) 등 록 번 호	
	주 소	(전화번호 :)			
자 동 차	등 록 번 호 (차량 번호)				
	번 호 판 규 격	☐ 짧은 (앞뒤짧은) ☐ 혼합 (앞에만 긴번호판) ☐ 앞뒤 긴번호판			
재발급신청사항		☐ 앞번호판 ☐ 뒤번호판 ☐ 앞·뒤번호판 ☐ 재봉인			
재발급신청사유		☐ 훼손 ☐ 색변경(기존번호판 → 흰색번호판으로 변경)			
「자동차관리법」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같이 신청합니다.					
년 월 일					
신 청 인 : (서명 또는 인) 생 년 월 일 : 전 화 번 호 :					
신 청 인 제 출 (준비물)					
1. 훼손, 헐어서 못쓰게 된 등록번호판 2. 자동차등록증 3.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가 직접 방문 신청시 신분증 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) – 대리인 신청 : 소유자 인감 날인된 위임장, 인감증명서, 방문자 신분증 – 법 인 : 법인 인감증명서, 위임장 인감날인, 방문자 신분증 ○ 차량등록번호 변경없이 기본번호판을 색깔만 흰색으로 변경하거나 흰색번호판 훼손, 찌그러짐, 헐어진 번호판 재교부, 재봉인 신청 7번창구 ○ 흰색으로 변경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며, 소유자가 원할 때 변경 신청합니다. ○ 자동차소유자는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에는 시·도지사에게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. (「자동차관리법」 제10조제3항)					
신청하는 곳		시·도 또는 시청·군청		처리기간	즉 시
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2조에 따라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가 정하는 금액					